의안 번호	103

2026. 10.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창원시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03

제출년월일 : 2026. 10. 16.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이나 창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고등학교” 및 “입학준비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를 두고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 학생으로 정하고,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다. 입학준비금의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제출과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시장의 지원 여부 결정·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입학준비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22.~10. 1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2

4)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학준비금을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 입학준비금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원시 외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입학준비금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 앞쪽의 제출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학생 또는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휴대전화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학생)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주 소			
	입학현황	학교명		
		소재지	□ 관내(창원시) □ 관외(시·군) * 관외학교는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중복수혜 여부확인	□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됩니다.**			
전자상품권 수령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앱 설치 여부	[ ] 설치 [ ]미설치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부(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읍·면·동장 확인사항	1. 지원대상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지원대상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창원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대상자(학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귀하께서 제공에 동의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1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나. 비용발생요인

○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27년 ~ 매년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인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원단가: 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규모: 연도별 초·중·고 입학생 추계인원 적용

○ 재원부담: 전액 시비

○ 추계방법

- 연도별 예상 지원인원 × 1인당 지원액(최대 50만원)
- 전자상품권 발행 및 지급에 따른 별도 행정비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책정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소요예산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대상자	24,537명	24,277명	22,164명	20,705명	20,197명
시비	54억	53억	48억	47억	45억
도교육청비	60억	60억	54억	50억	49억
총 예 산	114억	113억	102억	97억	94억

다. 재원조달방안: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과 道교육청비

3. 작성자: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남창원050			
정 책 명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당자명	이민	전화번호	055-225-240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9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평생교육과)	초 · 중 · 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이나 창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하여] [제정안] 별지 서식에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성별 구분 항목을 각각 신설하는 자체개선안을 마련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창원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선희/055-225-3966)

평생교육과장 귀하